[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9.9.30>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 보고서

1. 제조상황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화약류					
종류	전월이월	본월제조	양도(판매)	현재고	비고	종류	전월이월	본월제조	양도(판매)	현재고	비고

2. 판매상황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화약류					
종류	전월이월	본월제조	양도(판매)	현재고	비고	종류	전월이월	본월제조	양도(판매)	현재고	비고

3. 화약류사용현황

종류	전월이월	본월양수	사용(소비)	현재고	비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월중 제조·판매·사용현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전화)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지방경찰청장) 귀하
경 찰 서 장

※ 판매 또는 양도 외에 폐기, 도난, 망실, 그 밖의 사유로 금월말 현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 그 수량 및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시오.

(단위) ┌ 총포·도검 - 정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개
└ 화약·폭약 - kg / 뇌관 - 개 / 도화선 - m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